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정·주의 요구

제 목 동구 ○○○ 체육관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

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

내 용

광주광역시 동구 ○○○과에서는 ‘동구 ○○○체육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’을 주식회사○○○○○○○○건축사사무소(대표 ○○○)와 414,920천원에 2017. 7. 16. 계약하고 2017. 7. 17. 착수하여 2017. 11. 13. 완수하였고, ‘동구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(건축)’를 ○○○○○○○주식회사(대표 ○○○)와 4,524,443천원에 2016. 9. 9. 계약하고 2016. 9. 20. 착공하여 58% 공정률로 시공 중에 있고,

‘동구 ○○○체육관 건립공사 감리용역’을 건축사사무소 ○○(대표 ○○○)과 74,343천원에 2016. 9. 13. 계약하고 2016. 9. 20. 착수하여 감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.

1. 설계도서 작성 소홀

「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」 제6조(설계업무)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사는 건축법,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「건축사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사는 건축사법, 건축법 또

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, 건축물의 안전·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설계자는 [표1]과 같이 현장 조사 등 당초 설계서 작성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사비가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, 당초 설계서대로 시행했을 경우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등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부실하게 설계를 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다.

[표1] 동구 ○○○ 체육관 설계 부적정 내역

연번	설계 부적정 내역	공사비 증가액(천원)	비고
계		188,288	
1	기초파일항타 방법 부적정	86,444	
2	오수정화조 설치 누락	15,340	당초설계에 누락
3	조경공사 이식목 수량 오류 적용	41,624	수량 누락

2. 시공 및 감리 부적정

「건축법」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‘건축주’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·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‘건축사’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, ‘건축사’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, 건축물의 안전·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대로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하고, 공사감리자

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그런데 현장 확인 결과 [표2]와 같이 가설울타리 184미터 중 97미터를 미 시공하였는데도 별도의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, 시공자는 원형기둥 제작시 원형거푸집을 사용하지 않고 원형배수관을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공사를 시공하였다.

[표2] 동구 ○○○ 체육관 부적정 시공 내역

연번	부적정 시공 내역	정산 공사비(천원)	비고
계		6,653	
1	가설울타리 부족시공(97미터 미시공)	5,012	
2	원형기둥 : 원형거푸집을 사용하지 않고 원형배수관 사용	1,641	

3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0조제2항에 근거한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(고용노동부 고시)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‘동구 ○○○체육관 건립공사’를 추진하면서 아래 [표3]과 같이 기념수건을 구입하거나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집행하는 등 기준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.

[표3] 산업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내역

연번	구분	사용금액(천원)	감액금액(천원)	비고
계			3,735	
1	안전지원제(기념수건 구입)	3,000	3,000	2016. 10. 19
2	안전관리자 인건비 등	120	120	2016. 12. 16.
3	안전관리자 인건비 등	120	120	2016. 12. 20.
4	안전관리자 인건비 등	120	120	2017. 3. 2.
5	안전관리자 인건비 등	120	120	2017. 5. 29.
6	안전화구입비과다 (15만원, 3개→6만5천, 3개)	450	255	2017. 6. 12.

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

[시정] 미 시공된 가설울타리 사업비와, 원형기둥 제작시 원형거푸집을 사용하지 않고 원형배수관을 사용한 사업비 6,653천원과, 부적정하게 집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,735천원 등 총 10,388천원을 감액조치 하고,

[주의] 앞으로 각종 건축공사 시행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감리자에 대한 지도·감독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